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18291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정성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제도
변 론 종 결 2021. 5. 25.
판 결 선 고 2021.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93,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2020. 6.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 29. C조합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D 일원에서 사업진행 중인 E 아파트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자인 피고에게 계약금 대출을 함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C조합은 이 사건 업무협약에서 정한 연대보증책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1719),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46053)에서 2017. 3. 22. 원고는 C조합에게 1,584,479,6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9. 7. 19. C조합에게 피고에 대한 채무 합계 40,493,730원(= 판결확정금액 28,238,845원 + 판결확정이자 12,254,885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0,493,73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인 2019. 7.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0. 6.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